

해외안심결제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이하 "카카오뱅크"라 합니다)와 "국제 브랜드사"가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해외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제공하는 해외안심결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가입고객"과 "카카오뱅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가입고객"의 안전한 해외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카카오뱅크"가 제공하는 해외 인증(본인 확인) 서비스입니다.
 2. "가입고객"이란 "카카오뱅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등록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가맹점에서 지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카카오뱅크"의 가입고객(이하 "가입고객")을 말합니다.
 3. "개인 확인 메시지"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가입고객" 본인이 직접 설정하는 개인 확인용 문구를 말합니다.
 4. "결제 비밀번호"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고객"이 설정한 6 자리 이상 10 자리 이하의 숫자, 영문 또는 숫자와 영문조합의 암호를 말합니다.
 5. "국제 브랜드사"란 MasterCard 로 국제 결제망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6. "대사카드"란 "카카오뱅크"가 "국제 브랜드사"와 제휴하여 발급중이거나 향후 발급할 수 있는 "국제 브랜드사" 제휴 카드중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카드를 말합니다.
 7. "접근매체"란 "서비스"를 등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가입고객"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 다. "카카오뱅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가입고객"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8. "회원인증"이란 "휴대폰 인증" 및 기타 "카카오뱅크"가 정하는 인증 절차 등을 통하여 "서비스" 신청 당사자가 "가입고객" 본인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9. "휴대폰 인증"이란 "가입고객"이 소유한 휴대폰을 통해 "회원인증"을 진행하여 해당 휴대폰 명의자가 "가입고객"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카카오뱅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가입고객"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가입고객"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카오뱅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게시하고 "가입고객"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카카오톡 알림톡, "모바일앱"의 PUSH메시지, 휴대폰 메시지 등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카카오뱅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가입고객"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카카오뱅크"가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 "카카오뱅크"는 "가입고객"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통지된 후부터 변경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가입고객”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가입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가입고객”이 “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카카오뱅크”가 발급한 “대상카드”의 카드 번호, 유효 기간, 카드 고유 확인 번호(CVC) 등을 통해 “회원인증”을 완료하고 약관 동의 및 “개인 확인 메시지”, “결제 비밀번호”를 등록함으로써 “가입고객”과 “카카오뱅크”간에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제 5 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카카오뱅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신청 시점에 “가입고객”의 “대상카드”가 도난·분실,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2. “가입고객”이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여 등록하는 경우
3. “가입고객”의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4.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5. “가입고객”의 모바일 기기가 해킹, 루팅, 탈옥된 상태인 등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 “카카오뱅크”가 “가입고객”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 6 조 (서비스의 이용)

- ① “가입고객”은 “국제 브랜드사”와 해외안심결제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해외 전자상거래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가입고객”은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카드”와 “개인 확인 메시지”를 확인하고 본인이 지정한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회원인증”을 완료함으로써, 해외 전자상거래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결제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① “카카오뱅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가입고객”에게 알릴 때 “카카오뱅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② “카카오뱅크”는 그 밖의 정보 및 광고를 “모바일앱” 화면 또는 “카카오뱅크”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거래의 제한)

- ① “카카오뱅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카오뱅크”는 “서비스” 중단 예정 사실 등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게시하고 “가입고객”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카카오톡 알림톡, “모바일앱”의 PUSH 메시지,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중단예정일로부터 30 일 이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카카오뱅크”는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고객”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해킹 등으로 “카카오뱅크” 또는 “가입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입고객”이 “카카오뱅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6. 기타 “가입고객”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7.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9 조 (이용정지 및 해지)

- ① “가입고객”이 “카카오뱅크”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해지하거나, “카카오뱅크”의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카카오뱅크”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 ② “카카오뱅크”는 “가입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카카오톡 알림톡, “모바일앱”의 PUSH메시지,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사유 발생 당일 고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고객”이 고의·중과실로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2. “가입고객”이 가입신청서에 필수 기재사항 및 “서비스” 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타인의 카드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 ③ “카카오뱅크”는 “가입고객”의 “서비스” 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카카오톡 알림톡, “모바일앱”의 PUSH메시지,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가입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④ “카카오뱅크”는 “가입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카카오톡 알림톡, “모바일앱”의 PUSH메시지,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시점으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카카오뱅크”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고객”이 고의·중과실로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가입고객”이 가입신청서에 필수 기재사항 및 “서비스” 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실이 확인되고 나니 “가입고객”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가입고객”이 타인의 카드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4. “모바일 기기”의 명이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가입고객”이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5. “가입고객”이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6. “가입고객”이 “서비스”를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조치에 대하여 “가입고객”은 “카카오뱅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카카오뱅크”가 인정하는 경우에 “카카오뱅크”는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양도 금지)

“가입고객”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서비스” 이용계약상의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카카오뱅크”의 의무)

- ① “카카오뱅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카카오뱅크”는 “가입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며, “카카오뱅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입고객”의 개인(신용)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가입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카카오뱅크”는 “가입고객”에게 적법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카오뱅크”의 업무대행사 및 “국제브랜드사”(MasterCard)와 함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해외 부정사용 이의신청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 ④ “카카오뱅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고객”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카카오뱅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가입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12 조 ("가입고객"의 의무)

- ① “결제비밀번호”, “개인확인메시지”, 카드번호 또는 카드 비밀번호 등 일체의 보안 정보에 관한 관리 책임은 "가입고객"에게 있으며, "가입고객"은 이를 제 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가입고객"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 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카카오뱅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본 조의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가입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13 조 (사고 시의 처리)

- ① “가입고객”은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 등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카카오뱅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 1 항의 신고는 “카카오뱅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 1 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가입고객” 본인이 “카카오뱅크”에 전화, “모바일앱”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③ “카카오뱅크”는 “가입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가입고객”에게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14 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위탁)

- ① “카카오뱅크”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가입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카카오뱅크”는 수집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③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탁사의 개인(신용)정보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가입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카카오뱅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5 조 (손해배상 및 면책)

- ① “카카오뱅크”는 “가입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 범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카카오뱅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 범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카카오뱅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입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가입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고객”이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이를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 3 자가 권한 없이 “가입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카카오뱅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가입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가입고객”이 제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④ “카카오뱅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 16 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카카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그 외 개별약관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17 조 (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카카오뱅크”와 “가입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 칙 (2019.4.30.)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4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0.6.1.)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